

의안번호	2216398
의 퇴 인	이주영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 계 번호	26C0495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<u>설치·운영하여야 함</u>(의무화) 3.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(신설) 11.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(신설) 12.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(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25조의2 (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(제2항)	
3	안 제31조의5 (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)	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25조의2 (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 실의 설치 및 운영)	
3	안 제31조의5 (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의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중증도 분류 교육의 총괄 수행 주체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명시하고자 함
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중앙상황실을 두고 산하조직으로 총 6개 권역¹⁾에 광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
 - 또한,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현행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대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- 개정안의 중앙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범위(중증도 분류 교육 포함) 법제화에 따라 상황실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, 인력 증원과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각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, 업무수행 절차 등과 중증도 분류 교육의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준용하여 광역상황실의 이송병원 선

1) 서울인천, 대전충청, 광주전라, 대구경북, 경기강원, 부울경남

정 기능을 강화하고,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간 정보공유 지원 및 응급환자 이송·전원체계 모니터링 등을 추가로 수행할 경우 추가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

- 2026년 기준, 광역상황실 6개소 운영비로 169억 1,500만원이 배정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